제296회 정례회
2010. 12. 14(화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14(화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2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6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윤영현)

가. 제안이유

○ 실국간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

○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업무이관에 따른 직위조정

- 부위원장 1인은 정책관리실장 ⇒ 행정국장(안 제10조제2항)
-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 ⇒ 정책기획관(안 제10조제3항제1호)
- 간사를 예산담당관 ⇒ 자치행정과장(안 제10조제5항)

○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장용대)

금번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국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정책관리실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,

○ 안 제10조제3항제1호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

○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정으로 변경하고,

○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라

- 각호의 1 ⇒ 각호의 어느 하나

- ~의 규정에 의하여 ⇒ ~에 따라
- 인 ⇒ 명 등으로 변경함.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실국간 업무조정에 따라 직제규정에 맞게 부위원장,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, 법제처의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』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내용 및 용어정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,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조정이 2009년 있었음에도 1년 이상이나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
5. 토 론 요 지 : "생 략"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“인”을 각각 “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책관리실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, “인”을 각각 “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과”를 “각 호와”로, 제1호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“을 ”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“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인”을 “명”으로, “예산담당관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·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6조 중 “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”를 “『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』“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대상)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단체 보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대상)..... .....각 호의 어느 하나에..... ...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신청 및 접수)① (생략)	제7조(신청 및 접수)① (현행과 같음)
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.	②.....제1항에 따라..... ....
제8조(심의)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 한다	제8조(심의).....제7조제2항에 따라 ....
제9조(결과통보)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9조(결과통보).....제8조에 따른 ....
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	제10조(위원회 구성) ① 제8조에 따른 .....1명.....2명... .....15명....., ...
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 1인은 정책관리실장이되고, 1인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	② ..... 1명은 행정국장이되고, 1명은..... .....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	③.....각 호와.....

현 행	개 정 안
1.당연직 위원 :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, 문화여성환경국장	1. 당연직 위원 : 보건복지국장, 문화여성환경국장, 정책기획관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	④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.....
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	⑤ .....1명을 ....., ...자치행정과장.....
제11조(위원회 기능)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11조(위원회 기능).....각 호의 ....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회의 운영)① (생략)	제12조(회의 운영)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(신설)	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·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16조(실비보상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6조(실비보상) ....『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』가..... .....